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2006. 7

한국조세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요

- 일시: 2006. 7. 27(목) 14:00~16:00
-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4:00~14:10

인사말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4:10~15:50

주제발표 및 토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 ▶ 사회자
- ▶ 발표자
- ▶ 토론자

유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희대 교수)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서경대 교수)

이종오 변호사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조용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허종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가나다 순)

15:50~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00

폐회

< 목 차 >

I. 배경 / 1

II. 세원 투명성 현황 / 3

1. 과세자료 보유현황 및 소득과악률 / 3
2. 세원의 투명성이 낮은 원인 / 5

III.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 9

1. 기본방향 / 9
2. 소득과악률 제고 / 10
 - 가.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 11
 - 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 / 17
 - 다. 근거과세 확대 / 21
 - 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과악 강화 / 25
 - 마.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 29
3.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 / 31
 - 가. 부가가치세 탈루방지 / 31
 - 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 35
4. 세정의 투명화 / 37
 - 가.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화 / 37
 - 나. 세무조사의 선진화 / 38

IV. 영세·성실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40

1. 세원투명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방지 / 40
2. 성실납세제도 도입 / 41
3.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강화 / 42

V. 세원투명성에 대한 비전 / 43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기본방향

- ◇ 이번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은 그간 소득과약이 미흡했던 자료상,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업자, 집단상가 등 무자료 거래사업자, 호화 유흥업소 등 음성탈루소득자, 전문직 사업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주요 적용대상(Targeting Group)으로 설정
 - 대상인원은 전체 사업자 436만명(04년 귀속)의 약 14%에 해당하는 60만 명 내외로 추정됨
- ◇ 세원의 투명성 제고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현금거래 노출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내실화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소액현금거래에 대한 과약률을 제고
 - 사업용계좌를 도입하여 사업상 거래의 투명성 제고
 - 기장세액공제 확대, 적격증빙 수취기준 강화 등을 통해 근거과세 확대
 -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과약을 위해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의무화하고,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등 추진
 -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 도입, 자료상 근절, 거래증빙체계 개선 등을 추진
 -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 강화
 -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 대상 확대 등 금융정보 활용 확대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 개선 등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
 -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개선 등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병행
- ◇ 이와같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세부담 경감장치 강구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세부담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여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1.2배초과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경감
- ◇ 이번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2015년까지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50~60%)이 선진국 수준인 80% 수준까지 제고될 것으로 기대

1. 배경

-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각 경제주체들의 활동유인에 기인하는 생산성이라 할 수 있음
-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많은 경제적 제도가 개인의 경제활동 유인을 유지·강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
- 경제활동 유인은 노력과 경제적보상과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이 관계의 안정성, 즉 사회적 투명성에 큰 영향을 받음
 - 사회적 투명성은 근본적으로 분배의 공정성이라 할 수 있음
- 경제행위에 있어 분배의 공정성은 거래의 투명성과 이에 기초한 정부정책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
- 거래의 투명성은 경제활동 유인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기능
 - 富有에 대한 사회적 존경 혹은 자부심 형성을 통해 개인의 경제활동 유인 제고
-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빈곤문제, 사회갈등 등의 해소를 위해 조세·재정정책을 이용한 재분배정책 시행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경쟁적 시장에서의 활동능력을 유지토록 지원
 -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또한 거래의 투명성(혹은 소득(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거래 투명성 혹은 소득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가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재정정책은 사회통합 및 국가신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동 정책과 관련한 소득 및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살펴봄

<재정지출 및 사회보험 측면>

- 복지분야 지출의 효율성 증대와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세원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운영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약 수준이 미흡하여 형평성 논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보험료 징수 외에 실업급여 등 보상수준 결정을 위해 소득과약이 필요

-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EITC제도를 위해서도 세원의 투명성 확보는 필수

<조세정책 측면>

-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형평 시정
 - 신용카드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소득과약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과세형평성 확보에는 미흡
 - 외환위기 이후 과세형평성은 개선되는 추세이나 절대적 관점에서는 미흡
 - 숨은 세원 발굴,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

II. 세원 투명성 현황

1. 과세자료 보유현황 및 소득파악률

- 과세자료가 필요한 경제활동인구 1,989만명중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1,510만명 수준으로 자료보유율은 75.9% 수준(2004년)
- 과세자료가 필요한 인원은 경제활동인구 2,342만명(2004년)에서 실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 353만명을 제외한 1,989만명
-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계층은 약 478만명(경제활동인구대비 20%)수준으로 근로자 415만명, 자영사업자 63만명 수준
- 과세자료 확보비율은 질적 고려없이 단순비교할 경우 자영사업자(87.4%)가 근로자(72.1%)에 비해 높은 수준
- (근로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상 임금근로자 1,489만명중 1,074만명(72%)의 소득자료를 보유
 - 낮은 과세자료 확보율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자료(지급조서)가 파악되지 않는 데 기인
- (자영자) 경제활동인구상 자영자 499만명중 436만명(87%)의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의 신뢰성은 낮은 수준
 - 과세자료 확보인원중 기장사업자의 인원은 114만명(26.1%) 수준에 불과

하며 추계신고자까지 포함하더라도 213만명(48.9%) 수준	
- 나머지	223만명(51.1%)은 과세미달 추정인원과 무신고자 등
< 소득자료 보유비율 ()	

구 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소득자료 보유현황		소득자료 형태
		보 유	미보유	
근로자	1,489만명	1,074만명	415만명	지급조서
자영자	499만명	436만명	63만명*	부가세·소득세 신고자료

* 미등록사업자,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 등으로 추정

- 자영사업자의 소득과약률 수준은 50~60% 내외로 추정
- 미시자료를 이용한 성명재(2005, 1999), 김현숙(2005), 전병목·안종석(2005),이철인(1998) 등의 연구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과약률은 50% 내외
 - 성명재(2005), 김현숙(2005)에 따르면 2004, 2003년 소득과약률은 57% 수준
 - 전병목·안종석(2005)에 따르면 64~78% 수준

2. 세원의 투명성이 낮은 원인

□ 조세제도, 세무행정 및 납세행태 등 3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

가. 제도상 요인

□ 현금거래에 대한 파악장치 미흡

○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현금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음

- 신용카드 사용액의 민간소비 점유율은 15.5%(1999)에서 44.9%(2005)로 증가

- 미국의 경우 현금 15.8%, 개인수표 46.1%, 신용카드 30.2%, 기타 7.9%(2000) 수준

○ 현금영수증제도(2005)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현금거래 파악에 한계

□ 부가가치세 거래파악 흐름 단절 및 금융거래자료 활용의 한계

○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나 무자료거래, 자료상, 간이과세 제도 등으로 인해 거래파악 흐름이 단절

○ 금융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금융부문과 연계한 실물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기능이 미흡

- 미국·영국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흐름 파악

□ 추계과세 등으로 인한 근거과세의 한계

○ 영세 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추계과세를 두고 있으나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추계과세자료의 편입유인을 제공하여 거래자료 노출에 역행

- 추계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출누락분에 대한 비용이 자동 인정되어 매출누락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음

○ 실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사업자중 54%에 불과(2004년)

- 소득세 신고사업자 213만명중 추계사업자는 99만명(46%) 수준

나. 세무행정상 요인

대규모 사업자 위주의 세원관리

- 한정된 인력으로 징세효율성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일반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성실신고 유도 목적의 세무조사기능 미약

- 조사대상자 선정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높지 않고, 세금추징에 치중한 조사 등으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기능이 미흡
- 납세자의 탈루소득을 파악하고 불성실 신고를 방지하는 예방차원의 세무조사 강화노력이 필요

세원관리 기능의 약화

- 영세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추계과세제도를 폭넓게 운용한 결과 추계신고자의 비율이 높아(46%, 2004년귀속) 근거과세행정이 원활치 않음

다. 납세행태상 요인

세금포탈에 대해 낮은 죄의식,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사용 적극성 결여 등으로 소득노출에 한계

- 탈세,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 유인장치도 부족

〈참고〉 미국의 사례

1. 미국의 납세순응 수준

-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46,000개의 신고서 샘플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순응도(compliance)를 측정하여 잠정 발표 (2005.5)
- 샘플조사에 따르면 15.0~16.6%의 비순응비율(noncompliance rate)이 있는

규모를 추정

2. 세원투명성 확보 시스템

- 금융거래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지급조서를 수집·활용
- 사업과 관련한 거래는 개인계좌가 아닌 사업용계좌를 권장하고,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투명성 확보

가. 소득과약 인프라

- 과세자료 보고 프로그램 (Information Returns Program)
- 개인사업자, 법인, 연기금 등 보고대상 거래가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IRS에 Information Return 의무 부여
 - 보고 의무자는 소득·대금의 수령자에 대한 인적사항·거래금액 등을 기록한 Form을 제출하여야 함
- 보고대상 거래
 - \$10 이상의 이자·배당금 지급, 연금 등의 분배, 보험금·로열티 등 소득·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
 - 종업원이 아닌 자(독립계약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60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
 - 사업상의 거래과정에서 \$10,000 이상의 현금을 지급받는 등 특정 현금 거래(Form 8300)

나. 세무조사 (Examination)

- 납세자의 순응수준, 업종별 신고 성실도와 탈세유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NRP(National Research Program) 제도를 운영
- 2001년 이전에는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조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NRP제도로 변경
- NRP는 납세자 49,000명의 신고서를 분석하여 세금탈루 등 납세순응수준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으로
- 국세청은 NRP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탈루혐의가 큰 업종·사업자그룹에 대한 선택적 집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

다. 금융거래의 투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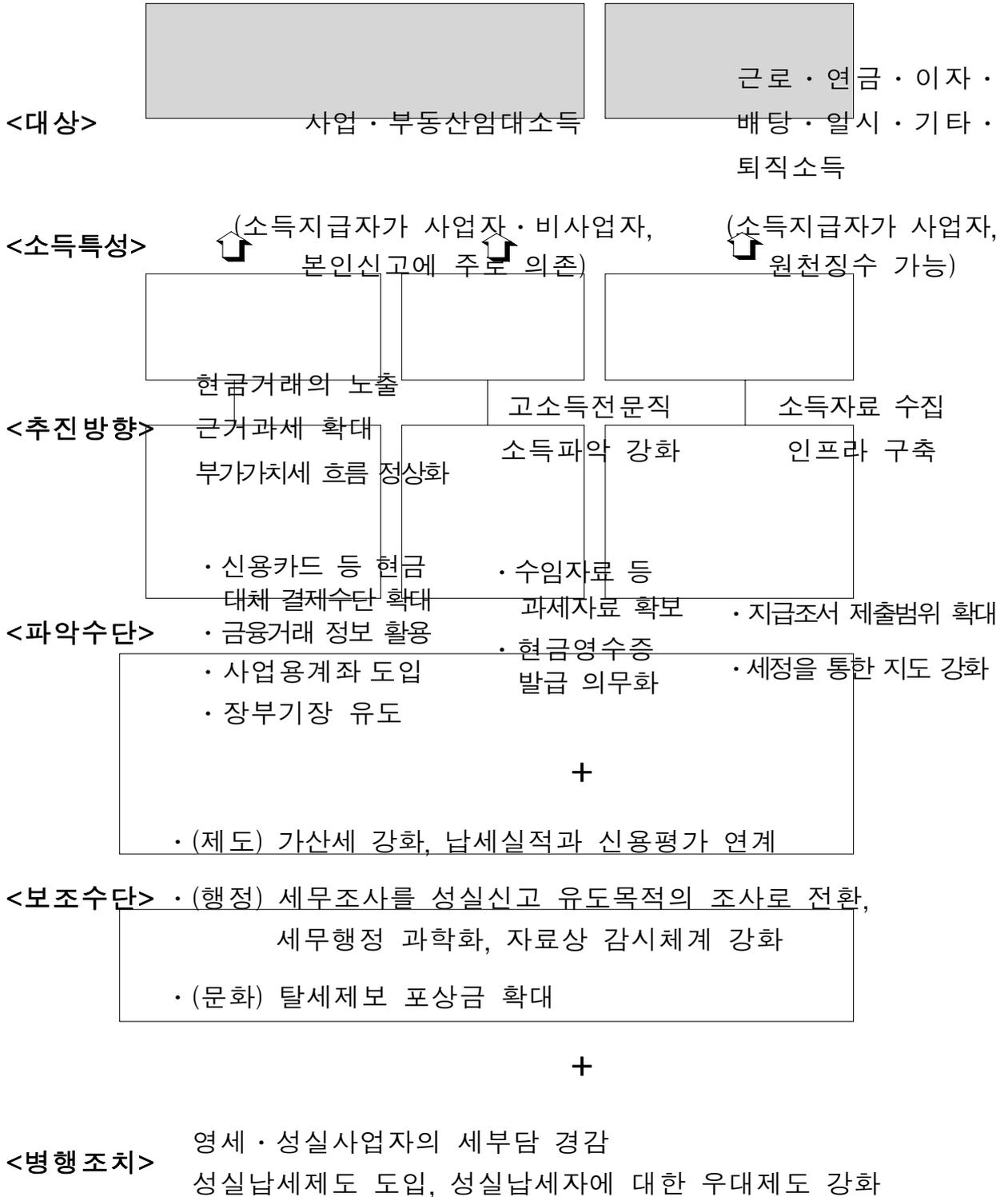
- 기업의 자금관리
-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기관(Bank &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을 통함
 - 자신의 신용에 따라 이자율과 여신한도(Line of Credit)가 설정되고 그 한도내에서 수표 발행
- 자연인 개인과 사업자 계좌(Business Account)의 분리
-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자의 상호명(Assumed Name)이 수취인이 된 개인 수표 등을 이용하여 은행 결제
 - 지출도 개인수표 등 수취인이 분명한 결제수단으로 처리되며,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1. 기본방향

- 세원 투명성 제고는 공평과세와 세제·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과 함께 추진
- 세원의 투명성을 사업자의 소득과악률 제고,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 및 세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제고
 - 현금거래 노출 강화,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사업용계좌 도입, 근거과세 강화 등을 통해 사업자의 소득과악률을 제고
 -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화 등으로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
-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경감장치 강구

2. 소득파악을 제고

< 기본방향 >



가.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1) 현금대체 결제수단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수준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직불카드 사용이 국제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1인당 연간 직불카드 사용건수 및 금액 비교 (03년)>		
	사용건수(건)	사용금액(달러)
국제 평균	42.4	2,365
우리나라	0.02	1.1

* 자료 : 국내외 지급결제통계 분석(금융결제원, 2005년),

* 국제평균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벨기에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산출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대체가능성은 높지 않음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사용되는 금액대(帶)가 다르고, 사용자계층도 차별성을 띠고 있어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에 비해 적은 수준

. 외국의 직불카드 1회 사용액이 신용카드의 70%수준으로 소액거래에 주로 사용

. 1회 이용규모는 직불카드 59.9달러 신용카드 84.2달러		
< 각국의 카드별 1회 사용액 (2003년) >		
	직불카드	신용카드
캐나다	44.5	71.9
이탈리아	103.2	105.6
일본	535.6	90.1
영국	58.0	109.2
미국	47.6	93.4
평균	59.9	84.2

주: 평균값은 각국(10개국)의 평균을 가중의 카드 보유 비율을 사용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자료: BIS,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n Selected Countries*, March 2005.

- 신용위험이 높은 젊은 소비자들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주로 직불카드를 사용

- 따라서, 소액 현금거래를 직불카드 결제로 전환하여 과표양성화를 도모할 여지가 있음

나) 정책대안

□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현재 신용·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동일한 소득공제율(15%) 적용(조특법 §126의2)
 - 소득공제액 = (카드등 사용액 - 총급여액의 15%) × 15%
- 따라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15%)보다 확대(예: 20%) 필요
 -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금액이 작은 소액현금거래를 직불카드 결제로 유도하여 소득과익률 제고

□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 무기명선불카드는 상품권처럼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카드
 - 무기명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도 제외
- 따라서,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에 기여하므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 부여 필요
 -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사용자가 취득후 최초 사용전까지 해당 신용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는 인증 절차 필요

2)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의 가맹점 확대노력으로 162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115만개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확보하여 현금거래의 투명성 개선
- 현재 소매·음식·숙박업 등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행정지도
-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도입 첫해에 18조원을 넘어 조기 정착에 성공
 - 신용카드의 경우 18조원 달성(1994)에 10년 이상 소요

- 2005년 1/4분기 대비 4/4분기 현금영수증 사용건수·금액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착하는 추세

<2005년 현금영수증 분기별 사용실적>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 간
건수(만건)	6,403	10,895	13,753	13,847	44,897
금액(억원)	26,159	41,004	56,799	62,466	186,428

-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비율(69%)은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며, 집단상가와 전문직 자영업자 등 과표양성화가 필요한 곳에서의 사용실적은 미미
-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전체사업자의 평균 가맹비율(69%)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개선여지
-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에 한계
-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더라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이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례 발생
 - 이는 현행 규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벌칙 등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약하기 때문임
 -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할 유인이 없어 발급거부 사례가 그대로 방치되는 데 기인
-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처벌규정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할 필요
-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장가맹점¹⁾을 신고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포상금(10만원)을 지급
- 그러나 일반가맹점의 사용거부 및 수수료 부담 전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하고 포상금제도도 없어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1) 위장가맹점은 실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숨기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가맹점

- 신용카드 사용거부,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여신전문금융업법 §70)

□ 따라서, 위장가맹점 신고외에 일반 가맹자의 사용거부나 수수료부담 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도입 필요

나) 정책대안

(1)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 일정규모(예: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이상 소비자 대상업종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 요구시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 이들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의 경우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

- 가맹점 가입의무화 없이 가입자에 대한 발급의무만 부과하는 경우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불형평 발생가능
-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PC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등 대체방안 제공 필요
- 가맹점 미가입시 각종 감면배제, 가산세(수입금액의 0.5%),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등 제재방안 강구

○ 다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화는 수수료 부담이 있어 강제화는 신중할
□ 필요

(2) 발급거부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가산세 등 세제상 불이익 부과

□○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 신설

- 발급거부시 : 가산세 부과 (발급거부금액의 5%)
- 상습거부시 : 감면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등 불이익 부과
. 연간 5회이상 발급거부하거나 거부금액 합계가 100만원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부시 세무조사 근거규정 신설

○ 현재 가맹점 미가입시에만 소득세·법인세 경정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부도 추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해 벌금 부과
 -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3조(명령사항 위반) 규정을 활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5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필요
 -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신설할 필요
 -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3)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유인 강화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인증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허용
 -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25일) 이내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세무당국이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예 : 익월 15일까지) 확인
 -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50만원이하) 부과
-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소매업, 음식업·숙박업 및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등을 포함하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등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		
- 포상금 신고대상 행위		
행위유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① 판매거부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판매거절
② 이종가격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요금 요구
③ 위장가맹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	
④ 사용(발급)거부	신용카드 사용을 가맹점이 거부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가맹점이 거부
⑤ 발급취소	(해당없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

-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 지급
 - . 현행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고발 포상금은 10만원 수준이나 신용카드에 비해 소액사용이 많은 현금영수증이 포상금 제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포상금 수준을 하향 조정
 - . 예외로 수수료, 현금할인 등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 상기 5만원의 정액포상금외에 소비자가 부담한 가격전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나 집행상 어려움 예상

□

기타 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기준 단계적 하향 조정 검토
 - 현금영수증 교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기준을 하향 조정(예 : 5천원 이상 → 3천원 이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다만, 건수 증대에 따른 시스템 용량, 자료 관리 문제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확대
 -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카드를 적극 보급할 필요
 - 2005년 현재 현금영수증카드를 155만매 보급하였으며, 2006년에는 원천징수의무자, 학교 방문, 세무서 신청 등을 통해 500만매 추가 보급 예정
 - 현금영수증복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혜택을 받도록 예산 확대
 - 연락처 불명, 소액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TV, 일간지, 라디오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4) 시행시기
- 납세자에 대한 사전계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예: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

□ 1) 혐의거래 ·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자료제공 범위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기능 제고와 이를 통한 국세청의 자료활용도 제고를 위해 혐의거래 ·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자료제공 범위 확대 필요

- 현재 원화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는 FIU의 자료수집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문제
- 또한 과세당국은 '조세범칙사건' 조사시에만 자료요청 가능
 -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시 혐의거래 · 고액현금거래자료를 FIU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를 제공
 - . 혐의거래는 2천만원 이상으로서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이며 고액현금거래는 일일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 조세범칙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곤란
- 따라서, FIU의 혐의거래 관련 자료수집 및 국세청 제공범위를 원화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자료까지 확대할 필요
- 조세범칙사건외에 이에 준하는 일반 세무조사시에도 자료요청이 가능하도록 제공범위를 확대
 - 미국 · 영국 · 호주 · 캐나다 등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와 관련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 또한, 국세청 과세정보도 FIU에 제공하여 FIU의 심사기능을 제고할 필요
 -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14)에서 FIU원장이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2)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

- 국세청은 금융실명법상(§4)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본점일괄조회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

- 상속·증여세 조사(상증법§83)
 - 부동산 투기조사, 1천만원이상 체납자 재산조회(금융실명법§4),
 - 명백한 조세탈루혐의를 금융거래관련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과세자료제출법§6)
- 낮은 소득과약률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 중심의 실물거래 흐름을 뒷받침할 금융거래정보의 확보가 필요
 - 특히 자료상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혐의자의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일괄조회 범위는 미흡한 수준
 - 따라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가 필요
 -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등 중요 탈루유형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를 허용
 - 조세포탈 및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및 전문직 등 탈루혐의자, 기타 중요 탈루유형 (예 : 회계장부 조작,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
 - *현행 과세자료제출법 제6조의 일괄조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대·열거

3)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

- 현재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증빙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
- 금융자료는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개인거래와의 구분측면에서 한계
- 따라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설치하여 사업상 거래는 사업용계좌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방안 필요
- 필요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과세당국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
- 실물흐름과 금융흐름을 비교하여 외형탈루 적출 가능
 - 사업용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거래의 불일치부분을 시정
- 자료상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가공노무비 발생 방지에도 기여

-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우선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제조(3억원), 음식·숙박(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5백만원)
 -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중 12.2%(53만명)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단위로 세무서에 신고
 -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등록이 사업장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거래의 기본단위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개설·운영
 - 단일계좌로 2개 이상의 사업장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
 - 사업용계좌 신고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계속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연도중 추가신고 허용
- 사업용계좌를 거쳐야 하는 거래
 - 사업과 관련한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인건비,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
 - 거래유형 : 자산매매(토지, 건물 등), 임차료·인건비·공과금 등 각종 경비, 매입(원재료, 상품, 제품 등), 매출 등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 명세 작성·보관
- 사업용 계좌 설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되,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예: 1~2년) 시행을 유예
 -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예: 수입금액의 0.5%) 부과
 -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거래분에 대해서도 가산세(해당 거래액의 0.5%) 부과
 - 다만, 금융거래가 곤란하여 거래 상대방 및 금액이 기재된 별도 명세를 작성·보관할 경우 예외 인정
 - 사업용계좌 미설치(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거래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사업자에 대해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사업용계좌(별도 명세작성 포함)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도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허용

- 사업용계좌의 활용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시 현행 금융거래 조회규정을 통해 사업용계좌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
-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

4)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 등과 연계체계 구축

-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의 소득·연체율 등에 따라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용평가가 필요한 경우 주로 개인의 재산·담보능력 등에 의존
 - 신용평가기관에 제출되는 소득·재산관련 자료를 국세청 D/B와 연계하여 개인의 소득축소 신고유인을 줄일 필요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험금의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을 국세청 신고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국세청 신고소득이 실제소득에 비해 과소한 경우 법원이 실제 소득액을 산정하여 판결
- 따라서 개인 신용평가 자료, 소송을 통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파악된 실제 소득자료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소득파악을 강화할 필요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정보(예금, 대출, 상환이력 등)도 국세청이 요청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를 위해 신청자 동의하에 국세청에 관련 소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조회 허용 검토

- 손해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통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 보험사는 매년 2월말 보험금 지급자료 및 산출근거를 국세청에 통보

다. 근거과세 확대

1) 장부기장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으나 실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54%에 불과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하고 있으며, 추계사업자중 약 84%가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매출액 기준 도소매 72백만원 미만, 제조·음식·숙박 48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 개인서비스업 36백만원 미만
 - 동 기준 초과 사업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등)는 증빙에 의하는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 연도별 기장자·무기장자 현황 >					
	(단위 : 천명)				
	2000귀속	2001귀속	2002귀속	2003귀속	2004귀속
신고인원	1,535	1,741	2,010	2,031	2,236
기장신고율	44.2%	45.4%	47.3%	50.1%	53.6%

- 추계사업자가 기장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우가 많아 기장 유도에 한계
- 기준경비율이 실제경비율보다 높아 기장 기피
 -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의 경우 증빙에 의한 금액만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와 달리
 - 증빙없이 모든 사업비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과세에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
- 기장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 관행도 기장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는 경우 세액의 10%(100만원한도)를 공제하고 있으나 기장유도에는 미흡 (성실신고 사업자는 20%)

나) 정책대안

-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 (100만원 한도 유지)
 - 산출세액이 적어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는 영세 사업자를 감안해 정액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면세자비율(47%, 2004년 귀속)이 크게 상승하는 문제 발생

추계과세제도 개선

-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단순·기준경비율제도는 유지
- 다만,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가급적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은 갖추도록 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을 확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편입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증빙만 관리하면 되므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크지는 않을 전망
- 신고자료·표본조사 분석 등을 통해 단순·기준경비율이 사업실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조정하여 추계과세가 무조건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유리하지 않도록 개선

2) 근거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현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 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및 5년간 보관의무 부여

- 다만 5만원 이하인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
 -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
 - 증빙불비가산세는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이나, 대다수 사업자(88%)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

-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 인하
 -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
- 적격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대상 확대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을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
 - 영세사업자(예 :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전체사업자의 46%)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 적용도 받지 않음을 감안하여 가산세 면제

3) 소득추계 과세기법 개선

□ 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매출액의 노출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추계소득이 실제소득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한계

- 외국의 경우 순자산증가법, 지출액법 등 다양한 추계과세기법을 개발·운용
 - 순자산증가법 (Net Worth Method) : 과세기간중 자산증가액에 개인적 지출비용(생활비)을 가산하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산정
 - 지출액법 (Cash Expenditures Method) : 과세기간중 이루어진 지출액에서 원천이 밝혀진 가용자금을 차감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추계과세

□ 따라서, 소비지출액에 의한 소득추계방법(지출액법) 도입을 검토

- 소비지출액을 파악한후 원천이 밝혀진 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금액으로 보아 추계과세하는 방법 검토
 - 사업자의 수입금액 노출이 현실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실효성 있는 추계과세 대안

- 다만, 납세의무자의 생활과정과 재산을 모두 조사·확인해야 하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집행과정에서 조세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적, 단계적으로 도입
 - 고액누락자(예: 5억원 이상)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지출액에 의한 각종 소득측정기준(개별 재산취득·보유, 지출항목 등)을 객관화하고 납세자의 사전 소명절차를 두는 등 우리 현실에 맞는 과세절차를 마련

4) 소득과약 공유체계 강화

-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기관 및 기초생활보장 운영기관(지자체) 간 정보공유 기반을 국세청 중심으로 구축하여 효율성 제고 필요
- 국세청의 경우 과세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소득포착률도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보험료 부과
- 소득자료 공유체계의 효율성 제고
- 사회보험공단 등이 관련자료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지급조서 전산제출 확대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의 자료 입수시기(현행 10월경)를 최대한 단축
- 직장가입자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징수기준 일원화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사회보험료 징수기준을 일치시켜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경감
 -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중 실비변상적 급여, 일정한도의 야간근로수당, 식대, 국외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은 근로소득중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야간근로수당, 식대 등에 대한 기준이 다양

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과약 강화

1)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과약을 위해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등 과세인프라 구축 확대
- 국세청에서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는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세원관리
 -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감평가 등이 해당
- 그러나,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 소득과약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
- 또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과약을 위한 기본자료인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시에도 가산세 제도가 없어 이행강제 수단 미흡
- 의사 등 면세사업자의 경우 별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음
- 고소득 전문직종간 소득과약 방법 및 수준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 존재
- 회계사, 법무사 등의 경우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협회가 제출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경우 수입액 등에 대한 자료제출없이 수입사건 경유건수만 제출
-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외형이 상당히 노출되었으나 여전히 소득과약의 사각지대가 상존
 - 성형·피부과·한의원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료항목이 많아 이들에 대한 소득과약이 미흡

나) 정책대안

(1) 전문직 전체

- 현재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의 경우 7,500만원 미만)로서 복식부기의무를 면제

-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직종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하여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에서 제외하여 복식부기의무 부여 필요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불이행시 무신고와 같은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됨
-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모든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의무도 부여됨

-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고객과 실명으로 거래하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및 고객요구시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00만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

-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서상 기재금액과 실지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 다만,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의사, 감정평가사, 법무사는 제외
 - 의사는 면세사업자이고, 소액거래건수가 많다는 한계가 있고 감정평가사는 국가기관·금융기관 등을 주로 상대하여 과표양성화 수준이 높으며,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수입사건 건수 및 보수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

(2) 업종별 세부방안

- 변호사의 경우 자료수집 범위 확대 추진
-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타전문직과는 달리 지방변호사회에 수입료에 대한 정보없이 의뢰인 인적사항, 소송물가액 등 수입사건 개요만 간략히 보고
- 따라서, 건별 수입가액과 수입건수 자료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빠짐없이 보고(변호사법 개정)하도록 한 후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토록 제도 정비 필요

< 전문직 종사자의 과세자료 제출현황 >

구분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장부 작성·보 수임료 자료	변호사법 §28	법무사법 §22	공인회계사법 §18	세무사법 §14
관련협회 제출근거	없음	법무사법 시행규칙 §49	공인회계사회칙	세무사회칙
국세청에 제출되는 자료	없음	· 업무실적 보고서 - 수입건수 - 보수액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자료 - 수입건수 - 수수료	· 수입실적 보고서 - 수입건수 - 보수액

주: 수입료 자료는 없으나 소송물가액이 적힌 소송관련자료와 의뢰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입사건
경유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됨

□ 의사·한의사·약사 등의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 범위
확대 및 사업장현황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 필요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료비(미용,
성형,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포함)로 확대 추진
 - 근로자의 세부담도 경감하고,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 확보가능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
에 대한 소득과약 수준 제고 기대
 - . 현재 의료비중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나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사·한의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가산세 (수입금액의 0.5%) 신설 검토~~
 - . 면세사업자중 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외형 파악을 위한
전단계로서 사업장현황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사업장현황신고제도 현황 >

	제출의무	가산세
과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	○	×

2)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신고내역의 정밀분석을 통한 엄정한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조사실적 공개 등 단계별 관리 강화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

-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적극 선정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신고내용의 즉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에 대한 세원정보와 기존의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소득률, 수입금액증가율,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율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적극 선정하여 엄정 관리

-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관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소득 전문직을 집중관리
- 사건처리 및 수입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설 수 있는 공직퇴임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퇴임후 일정기간(예: 2년) 중점 관리
 - 현행 변호사법 개정안(정부제출)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 부터 2년간 수입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통해 상기 수입자료들을 국세청이 수집한 후 이를 활용하여 신고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시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는 조사비율을 높여 나가면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 2006년의 경우 2005년(694명)에 비해 50%정도 증가한 1,041명 조사계획
 - 전문직종별 전담 조사반을 지방청·세무서에 설치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 전문직 사업자의 신고자료 및 조사실적 공개를 통한 세정신뢰도 향상
- 세무조사 결과,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결과 공개

마.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가산세 개선 및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1) 가산세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세목별로 가산세율에 차이가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 저해
- 소득세와 법인세는 고의성 유무 등 신고누락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부가세는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 주요 세목별 가산세율
 - . 소득·법인세 : 과소신고 10%, 무신고·부당과소신고 20%(법인 30%)
 - . 부가가치세 : 과소신고·무신고 10%
- 악의적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
- 외국의 경우 악의적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율을 40~100%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는 최고 20~30% 수준
 - 주요국의 가산세율(계획적·고의적 과소신고)은 미국 75%, 영국 100%, 호주 75%, 뉴질랜드 40% 수준

○  않고 비슷한

※ IMF 미션단의 정책권고 (2005.9)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허위 기장하는 경우 엄격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

나) 정책대안

- 공통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무신고·무납부 등 모든 세목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는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가산세를 ①과소신고가산세 ②무신고가산세 ③무납부가산세 ④증가산세 4가지로 나누어 규정

- 악의적 의무위반과 단순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차등 적용
- 부당과소신고 등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단순 무신고에 비해 높은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40~70%)
 -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사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은 40%~70%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는 연구결과(한국조세연구원 1997)
- 악의적 의무위반 유형은 현행 규정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결정
 - 악의적인 의무위반 여부 판단은 납세자가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금을 무신고·축소신고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2)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제도 확대

- 탈세제보는 시민에 의한 탈세감시시스템으로 탈세풍토를 시민의 고발에 의해 개선하는 데 효과적
-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는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반 탈세제보로 확대하여 포상금 지급
 - 조세범처벌법상 포상금 : 포탈세액 등의 5%이상 15%이하 금액(1억원 한도)
 -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 탈루세액의 2%이상 5%이하 금액 (1억원 한도)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 건당 10만원
- 다만, 5억원(탈루세액 기준)미만의 제보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포상금 지급실적은 미미한 수준
 - 2004년 7,652건 제보에 13건, 3억 2천만원 포상금 지급
 - 2005년 7,986건 제보에 20건, 7억 4천만원 포상금 지급
- 따라서, 포상금제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 의한 탈세감시를 강화
-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탈세제보 기준(현행 탈세액 5억원이상)을 하향 조정
- 포상금 지급한도액(현행 1억원)도 인상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10만원) 확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포상금 신설

3.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

가.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 도입

- 현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만 가능
 -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흐름이 단절되어 과표양성화에 애로 발생
 -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도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반정책으로 최종 소비자 상대업종의 매출과표는 상승하는 반면
 -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세부담 상승 우려
 - 따라서 도매상 등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추후 불이익(예:가산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
 - 따라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를 발급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무당국의 확인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공급자의 수령거부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고·확인만으로도 공제를 허용
- 적용대상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하며 매출자는 일반과세자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설정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 음식점업 등 영수증 교부사업자는 매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포함

- 영수증, 송금확인서 등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되 남용방지를 위해 증빙요건을 엄격히 운용할 필요
- 매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래증빙과 함께 일정기간(예: 25일) 이내 세무관서에 신고
- 세무관서는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내 확인
- 허위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2)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 개선

가) 현행 거래 상호대사체계 (cross-checking) 및 문제점

□ 일반과세자가 공급할 경우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파악
 - 일반과세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담 (공급가액의 1%)
 - 간이과세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담 (공급가액의 1%)

○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파악

- 일반과세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담 (공급가액의 1%)
-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부담이 없어 합계표자료 수집에 한계
-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기능 강화를 위해 면세사업자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필요

○ 소비자와의 거래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파악

- 거래의 상호대사를 통한 매출파악은 곤란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완

□ 간이과세자가 공급할 경우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거래는 영수증 중심으로 파악

- 거래당사자 모두 거래증빙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거래의 상호대사를 통한 매출파악 곤란
- .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 영수증만 교부하므로 사업자 간 거래의 상호대사를 통한 매출파악이 곤란

- 따라서 거래증빙의 흐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중간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업종(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해 간이과세 배제기준 강화 필요

○ 소비자와의 거래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파악

나) 정책대안

-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 상호대사를 위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1%)
- 간이과세자→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대상 업종 확대
-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최종소비자 상대업종이나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 중간단계에 개입
- 거래증빙의 흐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중간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간이과세 배제기준 강화
 -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은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화물차 등에 대한 세원관리강화

*현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적용 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의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으로 규정(국세청 고시)
 예) m²당 공시지가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면적(m²)은 서울 66 , 인천 73, 대전 89, 광주 89, 대구 89, 부산 76, 울산 89 등

⇒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 투명화를 위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및 면적기준을 시가상승에 따라 조정(간이과세자적용 배제기준을 현행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市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시지가별 기준면적도 하향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 적용배제

- 중장기적으로 전자계산서 도입 검토
- 중장기적으로 모든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전자계산서 시스템 도입
 - 성실납세제도의 정착과 함께, ERP·전자장부 시스템, 현금영수증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전자계산서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모색

3) 부가가치세 거래흐름 정상화를 위한 가산세 강화

- 현재 사업자등록 미등록, 세금계산서 미교부자,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자 등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 중과규정 없음
- 이 경우에도 단순오류와 동일한 가산세율(공급가액의 1%)이 적용되어 거래질서 문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

- 따라서, 고의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가산세를 중과(공급가액의 1%→2%)
- 세금계산서 미교부,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등

4) 자료상 근절을 위한 집중관리체제 도입

- 기존의 자료상 근절을 위한 행정대책을 보완 발전시킬 필요
- 자료상 처벌강화 근거마련(2004.12 조세범처벌법 개정)
 - 자료상 처벌형량 강화(징역 2년 → 3년)를 통해 긴급체포 가능
 - 종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에 추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포 허위 작성 및 계산서관련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자료상 '조기적발' 및 '상시조사체계' 확립
 -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료상 조기적발
 - 광역추적조사전담반(지방청 9개반)을 중심으로 상시조사
 - 자료상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 및 자료상 기동
- 대책반 운영을 통한 단속체계 구축
- '통신에 의한 자료상 정보를 국세청이 요구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허위가산세 부과 (예:1%)

자료상자료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공급가액의 1%→2%)하고, 자료상 수입 세무대리인도 함께 세무관리하는 체계 마련

- 자료상 수입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사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

- 자료상 감시체계의 강화를 위해 상시 감시, 점검체제를 확충
- 사업자단체를 통한 자율적 내부규제, 무자료거래 배격을 위한 자정 권한 부여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상시 감시체제 확충
 - 자료상 행위자 현장 체포체제 운영 강화
- 계속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 체제 구축
 - 표본점검을 부실세적자 조기발견 위주로 전환

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1) 간이과세제도 개선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연간 4,800만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면제, 신고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허용하는 제도
-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의무 면제가 근거 과세를 저해하고 거래상대방의 세금탈루 빌미를 제공하는 문제점
- 394만명 사업자중 165만명이 간이과세자(2004년)이며, 세수비중은 전체 세수의 0.3% 점유(1,100억원)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유지 하되 탈루수단으로의 이용가능성 차단 추진
- 외국의 경우도 각 나라마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조치를 두고 있음
- 따라서, 탈루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별 간이과세 여부 판단 및 적용배제 업종의 확대를 검토
- 다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현재 사업장별 기준에서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산하여 간이과세 여부 판단
- 간이과세 적용배제 대상업종 확대 검토
 - 현재 자동차소매, 단란주점, 호텔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배제

2) 사업자단위 과세체계의로의 전환

- 현행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도입 초기에 행정력과 과세관청의 세원관리 편의를 위해 사업장 단위의 신고제 도입
 - 예외적으로 ERP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 가능
- 사업장 단위 제도의 운영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증대, 국제적 기준과의 상이,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점 노출
 - 업무 전산화로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의 통합관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담당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증가
 - 복수의 사업장 거래 대부분은 가치의 증가가 없는 ‘내부거래’임에도 사업장마다 등록 및 신고·납부의무 부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순응비용과 행정관리비용의 증가 초래
 - 영국·프랑스 등 EU국가, 일본 등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도입국가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채택
- 따라서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세원관리 적정성, 외국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자단위 과세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 단기적으로 ERP설치 법인부터 도입
 - 현행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확대하여 ERP 설치 기업 등의 경우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세관리인 설정 등 모든 납세협력의무를 사업자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함
 -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적용범위 확대
- 중장기적으로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세원관리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단위과세로 전면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하여 법인 본점에서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주사업장(주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거소)에서 신고·납부

4. 세정의 투명화

가.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화

- 현재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산성실도분석(CAF)*을 활용하고 있으나 신고 항목에 대한 상대적 비교·분석방식으로 현실 거래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

*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국세청의 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

- 세무조사가 법령이 아닌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에 미약
- 따라서,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 개선 및 우리실정에 맞는 표본 세무조사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조사대상 선정의 신뢰성 제고 필요
- 납세성실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불성실 혐의가 큰 납세자에게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CAF)의 보완·발전 등 지속적인 조사대상 선정시스템의 과학화

※ '05.12월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등 실제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성실도 분석사항은 CAF에 지속적으로 반영

에 맞는 표본

■ 미국 NRP(National Research Program)과 비교

- 납세성실도 파악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위해 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정밀조사하는 프로그램
-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는 순수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이 아닌 사전분석에 의해 탈루혐의가 큰 대상을 선정했다는 점과, 표본수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NRP와는 큰 차이
- 미국의 NRP와 같은 표본조사는 성실한 납세자까지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광범위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등으로 우리나라 세정환경에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

□ 자료 공개와 법제화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

-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 등 주요 조사 결과를 국민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
- 조사의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선정절차 등을 법제화
-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규정

□ 세무공무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나. 세무조사의 선진화

□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준응도는 세무조사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세가 증가될수록 높아짐

-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이 낮아 성실신고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IMF, 2005)

□ 세무조사기법 선진화

- 세무조사의 조사비율을 단기간에 높이기는 어려우므로 탈세규모 및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조사방식, 조사기간·강도를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 특히, 납세성실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조사대상 선정시스템의 과학화(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CAF)의 보완·발전)를 지속적으로 추진
- 조사사례·기법을 DB화하여 조사공무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 동시에 불성실 업종·유형부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의도적인 세금 탈루·신고수준의 임의 조절 등 이른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 : Aggressive Tax Planning) 차단

- 의도적인 세금포탈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
- OECD Working Party등을 활용하여 ATP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그 효과가 검증된 선진국의 관리 방안을 검토
 - * 호주 : ATP운영위원회를 설치(ATP Steering Committee)하여 관련 정보를 분석 (정보분석팀, ATP조장자TF, 소기업 ATP분석팀, 조세피난처 TF로 구성)
 - * 캐나다 : ATP전문센터를 설치 ATP 행태 분석을 통해 조장자 등의 적발 방법 등을 개발
- 자료상과의 거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절세명분으로 세금탈루를 부추기는 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조세범 처벌법의 벌금형 처벌 수준 조정을 검토

◇ 세원 투명성 제고는 증세목적이 아니라 공평과세와 세제·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대책과 함께 추진

1. 세원 투명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방지

-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단기적으로 완화하여 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유도할 필요
- 현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자들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제도를 시행중
 -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전자상거래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공제
 - 그러나, 동제도의 적용시한이 06.12로 종료
-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세부담 증가 상한제를 시행중
 - 업종별 기준신장률(3~22%)을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액 등의 150%를 2년간(첫해 100%, 다음해 50%)에 걸쳐 공제
 - 그러나, 요건이 엄격하고 영세사업자들이 적용받기에는 국세청장 고시 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등 요건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단순화하여 적용할 필요
- 따라서, 단기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제도의 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부담 증가 방지대책 강구 필요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현행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 시한(2006.12)을 2년간 연장
 - 대상에 RFID(전자태그)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 추가
 - *RFID(Radio Frequency IDendification):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장치
-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를 단순화하여 확대 시행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배 초과 증가한 경우 초과증가분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대상은 수입금액 기준(자기조정 이하), 기장 신고, 신용카드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배 초과 증가한 사업자
 - * 도소매업: 6억원미만, 음식숙박업: 3억원미만, 서비스업: 1.5억원미만

2. 성실납세제도 도입 과세행위 최소화하는 등 요건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단순화

- -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성실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 (현재 국회 재경위 계류중)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히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는 유지
 - 지출증빙 수취,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 유지
 -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25%)를 통해 세액 계산 단순화
 -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경정배제

3.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강화

-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
- 현재 납세자의 날 표창, 세금포인트 제도, 고액·성실납세자 제도 등 다양한 우대제도를 시행중이나, 한정된 적용범위와 세정상 우대라는 한계

<납세자 우대제도 현황>		
구 분	현 황	우 대 사 항
납세자의 날 표창 (67.3월시행)	04. 47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면제 · 납세담보제공 면제 (1~3년) · 세무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조달청 등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 지자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10만원당 1점)하고, 포인트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05. 469명	
	06. 470명	
세금포인트 (04.4월시행)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100점 이상 : 징수유예 · 납기연장시 2억 원을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포인트 1,000점 이상 :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서비스, 민원증명 신청시 택배서비스 제공
고액·성실 납세자 (06.1월시행)	06. 25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1억원이상 납부 또는 세금포인트 5년간 5만점 이상, 법인세 10억원이상 납부자중 선정 · 출입국시 모범납세자 전용심사대 이용

- 따라서, 우대 대상자 및 혜택범위의 확대를 추진
- 우대 대상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유도
-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에 맞춰 실효성있는 우대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

◇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공평과세 실현

- 소득포착률 : 현행 50~60% 수준을 80% 수준까지 제고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과약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제고
 - 미국의 소득포착률은 85% 수준 (IRS 추정)
 -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득과약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보장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과세자비율 : 현행 50%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70% 수준으로 제고
 - 국민개세주의 원칙,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측면에서 볼 때 과세자비율의 확대를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
 - 외국의 과세자 비율 : 미국(68%), 일본(79%), 캐나다(68%)
- 장부기장 비율 : 현행 50%에서 80% 수준까지 확대
 - 근거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기장사업자의 비율을 매년 3%p씩 제고